해협식민지와 제2차 사법헌장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826년의 해협식민지

1826년 동인도회사는 해협 연안에 보유한 세 거점, 즉 페낭, 말라카, 싱가포르를 하나의 행정 단위인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로 통합했습니다.[1] 행정 중심지는 처음에 가장 오래된 정착지인 페낭의 조지타운에 있었습니다. 1832년에는 교역량과 인구에서 페낭을 앞지른 싱가포르로 옮겨졌습니다.[2] 이 이전으로 싱가포르는 이 지역에서 영국의 권력과 상업을 이끄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동인도회사 체제에서 해협식민지는 벵골 관구(Bengal Presidency)의 한 구역으로서 캘커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해협식민지는 인도에서 온 죄수들의 유형지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 죄수는 싱가포르의 도로와 공공건물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습니다.[3] 캘커타에서 해협식민지는 별다른 비중을 갖지 못했고, 이러한 종속 관계는 싱가포르 상인들의 불만을 낳았습니다. 상인들은 런던의 직접 통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1867년 4월 1일 해협식민지는 식민부(Colonial Office) 관할로 이관되어 영국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B편에서 다룹니다.[4]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페낭의 제1차 사법헌장과 적용 법률의 문제

해협식민지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라는 문제는 페낭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1807년에 부여된 제1차 사법헌장(First Charter of Justice)은 당시 프린스 오브웨일스섬으로 불리던 페낭에 법원을 설치했습니다.[5] 반면 싱가포르에는 건설 당시 이에 상응하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재관(Resident)이 사법을 담당했고, 1823년부터는 상인 사회에서 선발된 치안판사들이 이를 보좌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규정들의 법적 기반은 불확실했습니다. 특히 중범죄가 문제였습니다. 주재관에게는 중범죄를 재판할 명확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법원이 없다는 사실은 상인들에게 큰 불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계약을 강제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정이 필요했습니다. 주민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신용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성장하는 항구가 주재관의 비공식적 사법에 무한정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페낭 법원의 관할을 해협식민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1826년 11월 27일의 제2차 사법헌장

제2차 사법헌장(Second Charter of Justice)은 1826년 11월 27일 영국 국왕이 발령했으며, 이로써 프린스오브웨일스섬·싱가포르·말라카 사법법원(Court of Judicature)이 설립되었습니다.[6] 이 법원은 총독 또는 지사(President)와 법원이 열리는 거점의 주재 참사관(Resident Councillor)을 두 명의 판사로 하고, 여기에 직업 법관인 리코더(Recorder)를 더해 구성되었습니다.[7] 행정관과 직업 법관을 결합한 구성은 당시 식민지 관행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코더는 법률가가 아닌 동료 판사들과 자주 대립했습니다.

이 헌장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설치와 구성, 관할권, 적용 법률, 그리고 법률 실무가에 대한 규율입니다.[8] 법원은 잉글랜드 상급법원을 본뜬 관할권을 부여받아 민사, 형사, 교회 사건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담당했습니다. 해사 관할권은 1837년에 추가되었습니다.[9] 2026년 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은 이 헌장을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출발점으로 기리며 2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10]

리코더와 법원의 초창기

초대 리코더는 헌장에 이름이 명시된 존 토머스 클래리지 경(Sir John Thomas Claridge)이었습니다.[11] 그의 재임 기간은 법원의 순회 재판 방식을 둘러싼 로버트 풀러턴(Robert Fullerton) 총독과의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그에게 연봉 4,000파운드와 순회 경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현지 정부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지 정부는 그의 출장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클래리지는 1828년 1월 싱가포르와 말라카로의 순회 재판을 거절했습니다.[12] 법원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정된 것은 1828년이었습니다.[13]

경비를 둘러싼 다툼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사법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를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의 실효성은 그에게 주어진 자원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리지는 후에 소환되었습니다. 해협식민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논쟁거리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사법부는 소박하게 시작된 오랜 발전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변호사와 실무 규율

헌장이 정한 틀의 네 번째 요소는 법조 직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헌장은 법원에 변호사(advocates and attorneys)의 개업을 허가하고 그 행위를 규율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14] 초기 수십 년 동안 해협식민지에는 자격을 갖춘 법률가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서거나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대리인에게 의존했습니다. 상업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수행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회사법, 해운법, 보험법에 관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 변호사회는 통합형 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실무가가 법정에서는 변론을 맡고 의뢰인에게는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특징은 오늘날에도 '싱가포르 대법원의 변호사(advocate and solicitor of the Supreme Court of Singapore)'라는 명칭에 남아 있습니다. 통합형 직역은 같은 로펌이 법정 안팎에서 상인들의 필요를 충족하던 소규모 상업 관할지역에 잘 맞았습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성장한 로펌들과 이후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 로펌들은 J편에서 다룹니다.

이후의 헌장과 대법원

1855년 8월 12일에 부여된 제3차 사법헌장(Third Charter of Justice)은 싱가포르의 사건 증가에 대응해 사법법원을 두 개의 부로 개편했습니다.[15] 식민부로 이관된 뒤 1868년 대법원 조례(Supreme Court Ordinance)는 사법법원을 폐지하고 수석재판관(Chief Justice)이 이끄는 해협식민지 대법원으로 대체했습니다. 1873년 법원 조례(Courts Ordinance)는 대법원에 항소법원으로서 재판할 관할권을 부여했습니다.[16] 이렇게 사법헌장들은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채 식민지 입법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17]

독립 후 1969년 대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969)은 고등법원, 항소법원, 형사항소법원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대법원을 재설립했습니다.[18] 런던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에 대한 상소는 199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소법원이 싱가포르의 최종심 법원입니다.[19] 2015년 고등법원의 한 부로 설립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F편에서 다룹니다.

주

1. Wikipedia, "Straits Settlement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Originally established in 1826 as part of the territories controlled by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Wikipedia, “Straits Settlement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Their capital was moved from George Town, the capital of Penang, to Singapore in 1832”. ↩
3. Wikipedia, “Straits Settlement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이 식민지는 “a Division within Bengal Presidency”로 운영되었으며, 각 정착지는 유형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
4. Wikipedia, “Straits Settlement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On 1 April 1867, the Straits Settlements were transferred to the British Colonial Office and became a Crown colony”. ↩
5.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The Making & Unmaking of a Template for Justice”,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제1차 사법헌장은 1807년 페낭에 대해 발령되었습니다. ↩
6.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1826년 11월 27일 발령된 제2차 사법헌장은 “established the Court of Judicature of Penang, Singapore and Malacca”. ↩
7.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헌장 인용: 법원은 “the Governor or President and the Resident Counsellor … of the Station where the Court shall be held, as two of the Judges … and … the Recorder”로 구성되었습니다. ↩
8. 헌장이 정한 틀의 “four pillars”, 즉 법원의 설치와 구성, 관할 범위, 적용 법률, 법률 실무가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참조. ↩
9.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법원에 해사 관할권이 부여된 것은 1837년입니다. ↩
10.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
11.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of Justice and the First Recorder (Part 1)”, *Singapore Law Gazette*, 2023년 3월: 초대 리코더는 헌장에 이름이 명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된 존 토머스 클래리지 경(Sir John Thomas Claridge, 1792–1868)이었습니다. ↩

12. 풀러턴 총독과의 분쟁, 연봉 4,000파운드와 순회 경비, 그리고 1828년 1월 클래리지의 순회 재판 거부에 관하여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of Justice and the First Recorder (Part 1)", *Singapore Law Gazette*, 2023년 3월 참조. ↩

13.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사법법원은 1828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정되었습니다. ↩

14. 제2차 사법헌장에 따라 사법법원이 변호사(advocates and attorneys)의 개업을 허가하고 규율할 권한에 관하여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참조. 싱가포르 변호사회의 역사에 관하여는 Kevin Y.L. Tan (ed.), *The Singapore Legal System*, 2nd edition,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

15.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제3차 사법헌장은 1855년 8월 12일 부여되었으며 사법법원을 두 개의 부로 개편했습니다. ↩

16. Judicial Duties Act 1867, Supreme Court Ordinance 1868, Courts Ordinance 1873에 관하여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참조. ↩

17.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 제2차 사법헌장의 효력은 "not through explicit repeal but through gradual supersession by new colonial legislation, particularly the 1868 Supreme Court Ordinance" 종료되었습니다. ↩

18.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969는 "re-established the Supreme Court of Singapore, comprising the High Court, the Court of Appeal and the Court of Criminal Appeal".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9. 추밀원에 대한 상소는 Judicial Committee (Repeal) Act 1994에 의해 1994년 4월 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